

2019년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4. 8.(월요일), 16: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강상욱, 백대용, 손승우(분과위원장)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7회)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00건(안건번호 제2019-8547~1099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되,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촬영한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 게시물 1개 안건(제2019-8552호)은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견 없으며,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 이견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관련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정보제공청구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며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8547~1099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300건임

안전번호 제2019-8547, 8548호는 일반인 신고 민원에 따라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 게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 설정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 아이디와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 하단의 이메일을 보여주면서)네이버 이용자의 아이디와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인이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큼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해당 블로그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도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약 300개의 링크 게시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 게시물에는 파워링크 광고와 네이버 TV 광고가 살려 있음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의 다른 게시물들을 보여주면서) '□□□□' 사이트는 약 2,800개의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게임을 올린 것으로 보임
한편 심의안건의 게임은 현재 온라인에서 5,500원에 판매 중임

- A 위원 :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게임 제공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임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으로 플래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어 재생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용자의 버퍼(buffer)상에 저장되었다가 RAM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

- C 위원 : 온라인서비스가 직접 게시한 경우 인터넷호스팅사업자는 저장서비스제공자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플래시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인터넷호스팅 사업자에 대하여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인터넷호스팅 사업자는 '○○○'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 동일한 인터넷호스팅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삭제 권한이 없다는 회신을 받음
다만 인터넷호스팅 사업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보호원의 시정조치 권고 내용을 전달하였고,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복제물을 삭제한 사례는 있음

- C 위원 : 온라인서비스가 직접 게시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보호원의 시정권고 외에 보호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우리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는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심의·의결하고 있음
대안으로는 시정권고와 별개로 보호원 명의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는 문서를 보낼 수 있을 것임
- B 위원 : 인터넷호스팅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지만, 심의위원회가 아닌 보호원 차원에서 수사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B 위원 :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보호원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 차원에서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음
- B 위원 :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시정권고 심의 등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원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할 것임
- C 위원 : 심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 대

하여 보호원은 심의 요청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의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6년 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2017년, 2018년 전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음
- C 위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8548호와 별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A 위원 : 다른 의견으로 안전번호 제2019-8547호는 게임소개와 함께 직접링크(direct link)가 게시되어 있는데, 링크 하나로 인하여 게시물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과도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면서)해당 블로그의 이름은 '카원의 플래시게임'으로 게임 불법복제물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해당 게시물과 광고를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은 게임 불법복제물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게시자는 광고 게재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원천 불법복제물이 삭제되면 링크는 별다른 의미

가 없게 되는데, 원천 불법복제물이 삭제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링크를 삭제하게 되면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음

- B 위원 : 우리 심의위원회는 직접링크(direct link)의 경우 민사 방조 책임 성립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결하고 있음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의 불법복제물로 의 접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방조는 타인인 정범의 범죄를 도울 때 성립하는 것인데, 본 건은 불법복제물을 올린 사람과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타인이 올린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보다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음
동일인으로 보이는 게시자는 네이버 블로그와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두 군데서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 건은 민원인이 게시물 주소를 특정하여 신고한 것인데, 시정권고 조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음
- A 위원 :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게시물 삭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것으로 해당 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854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설정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

이 되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8548호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시정권고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인터넷호스팅사업자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8552호는 영화상영관에서 현재 상영 중인 최신 영화를 녹화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은 심의일 현재 삭제되어 있음
- A 위원 : 해당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캠버전’의 화질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우리말 자막은 없고, 화질은 나쁘지 않은 편임
참고로 해당 저작물은 IPTV 출시 전인 최신 영화로 현재 ‘캠버전’만 유통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이의 없음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8549호는 영화상영관에서 무단

촬영한 최신 영화 불법복제물로 위 게시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8553~8610호는 출판물 텍스트 파일을 네이버 밴드에 첨부파일로 게시한 사안임
(해당 네이버 밴드를 보여주면서)해당 밴드는 별도의 회원자격 요건은 없으나 적극적으로 밴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은 퇴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특히 안전번호 제2019-8561호, 8571호는 A라는 사람이 불법복제물을 요청하면 B라는 사람이 댓글로 텍스트파일로 첨부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시정권고를 하게 되면 게시물 전체가 삭제되는데, A가 작성한 부분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고 B가 작성한 댓글은 불법복제물 그 자체임

(해당 네이버 밴드의 회원 수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이 조사할 당시에는 회원 수가 약 2,700명이었으나 현재 회원 수는 약 3,300명에 달함
(해당 밴드의 소개말을 보여주면서)어문저작물의 불법복제물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밴드이고,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려야 승급이 됨

- B 위원 : 해당 밴드의 명칭이 '△△ △△ △△ 밴드'인데, 그렇다면 △△ 외에 ▽▽, ○○ 밴드도 있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밴드의 공지사항을 보여주면서)△△ 밴드 외에 6개 밴드가 있음

[전문위원의 나머지 발언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로 함]

- A 위원 : 공지사항에서 언급되는 '△△' 밴드 외에 다른 밴드가 검색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네이버 밴드 검색화면을 보여주면서)1차 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밴드는 실제로 검색이 되지 아니함
- C 위원 : 해당 네이버 밴드에 대한 시정권고 집행과 별개로 보호원 차원에서 수사요청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호원의 담당부서에 전달하겠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안건번호 제2019-8549~8551호, 제2019-8611~10997호는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사이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B 위원 : 별 다른 의견 없음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동의함

- 손승우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8549~8551호, 제2019-8611~10997호는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기로 의결함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8552호 게시물에 대하여는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나머지 안건번호 제2019-8547~8551호, 제2019-8553~1099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o 손승우 분과위원장이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3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6.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